

학 부 모 위 원 선 출 공 고

계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2024학년도 계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
1. 입후보 등록

가. 자격

- 본교 병설유치원, 초등학교 학부모로서 국가 공무원법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-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지 아니한 자

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

- 피성년후견인
-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⑥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⑥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⑥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나. 등록기간 : 2024년 3월 6일(수) ~ 3월 12일(화) 16:00까지

다. 등록방법 : 현장접수(교무실), 이메일(qhtjd12345@korea.kr)

※ 위의 등록 방법 중 본인이 편한 방법 하나를 택하여 신청

라. 등록서류 : 입후보 등록서,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, 각 1부(붙임참조)

2. 위원선거

가. 선거일시 : 2024년 3월 20일(수) 15:00~ (학부모총회 당일)

나. 선거방법 : 무기명 투표로 선출

다. 학부모위원 정수 : 4명(초등 3명, 유치원 1명)

라. 소견발표 : 선거전에 후보1인 3분 이내 소견 발표

마. 선거인 명부 열람 : 2024년 3월 15일 ~ 3월 20일(계수초등학교 교무실)

3. 당선자 발표

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
2024년 3월 6일

계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